대·중소기업의 동반성장지원을 위한

NH다같이 성장론

「NH다같이 성장론」 이란?

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이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을 기반으로 1차 협력기업이 2차, 2차 협력기업이 3차, 3차 협력기업이 4차 협력기업에 발행한 상생매출채권 범위 내에서 각 협력기업이 자유롭게 대출이용이 가능한 상생결제 상품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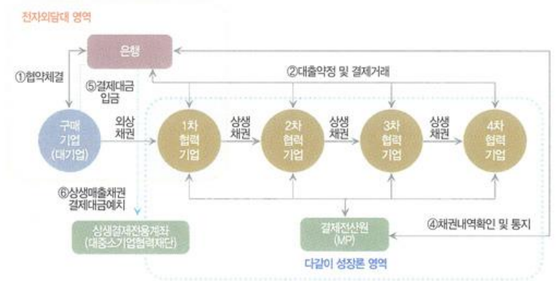
구매기업 협약 시 유리한 점

- **협력기업 상생지원**
 - 외상매출채권 발행으로 1, 2, 3, 4차 협력기업까지 결제 지원
- **업무처리 편리성**
 - 인터넷뱅킹, 전용회선(VAN)을 통한 거래로 업무 편리
- **자금관리 탄력성**
 - 외상매출채권 발행으로 자금결제에 탄력성 확보

협력기업 거래 시 유리한 점

- **금융비용 절감**
 - 구매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 이용
- **현금유동성 제고**
 - 납품대금 조기회수를 통한 자금 운용
- **거래 편의**
 - 인터넷을 통한 납품대금 결제

「NH 다같이 성장론」 상품 프로세스



구매기업 협약

자격	▸ **기업규모가 대기업인 법인** ※ 당행에서 정한 신용등급기준(4B등급)에 미달할 경우 약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약정한도	▸ **채권발행한도 :** 전년도 매출원가의 1/2 이내 ▸ **총대출한도 :** 전년도 매출원가의 1/4 이내
금리	**기본금리** • 기간별 KORIBOR금리 적용 (2015.3.20.기준, 기준금리 KORIBOR 180일 연1.82%) **가산금리** •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: 최저 연1.64% (2015.3.20.기준, 구매기업 신용등급 4A등급) **적용금리** • 최저 연 3.46% (2015.3.20.기준, 기준금리 KORIBOR 180일 연1.82%, 건별대출 180일 실행 시, 구매기업 신용등급 4A등급) ※ 협력기업 대출실행 시 대출이자는 대출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일괄 선취합니다. ※ 상기 적용금리는 실제 대출취급 시 기준금리 변경 및 구매기업의 신용등급 등의 추가적인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약정기간	▸ **한도약정기간 :** 1년 이내 ※ 한도약정 만료일 30일 이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연장
결제	▸ **결제계좌에서 자동 상환** ※ 발행한 매출채권의 만기일 영업시간이내까지 결제대금을 결제계좌에 입금한 경우 자동 상환되나, 영업시간 이후 입금한 경우 미결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본 상품은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의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결제에 해당되는 상품으로 도입 시 동반성장위원회 평가기준에 따라 득점 가능



1차, 2차, 3차, 4차 협력기업 약정

대출대상	▸ **아래의 기준을 만족하는 1차, 2차, 3차, 4차 협력기업** – 당행과 협약을 체결한 구매기업에게 직접 물품 등을 공급하는 1차 협력기업 – 상거래 납품관계상 상위 협력기업으로 물품 등을 공급하고 상생매출채권을 받은 하위 협력기업 (2, 3, 4차 협력기업)
자금용도	▸ **운전자금**(상거래 결제자금)
대출한도	▸ 구매기업 또는 상위 협력기업에 대한 연간 납품 금액 이내 ▸ 납품계약서상의 계약액
건별대출 실행	▸ 한도약정 범위내에서 구매기업 및 상위 협력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금액 범위 내 ▸ 건별대출의 만기일은 상위기업으로부터 발행받은 개별 매출채권 만기일과 동일 ※ 은행과 구매기업이 별도 약정한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건별대출실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적용금리	▸ 매출채권별 구매기업의 약정금리 적용
대출기간	▸ **한도약정기간 :** 1년 이내 ▸ **건별대출기간 :** 상위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공급 후 발행받은 매출채권의 만기일 이내로 최장 180일 이내 ※ 대출대상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상생매출 채권발행	▸ 구매기업으로부터 1차 협력기업이 발행받은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1차 협력기업은 2차 협력기업에게, 2차협력기업은 3차협력기업에게, 3차협력기업은 4차 협력기업에게 상생매출채권 발행 가능 – **발행가능 시점 :** 상위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을 발행받은 날로부터 매출채권 만기일 전 영업일까지 상생매출채권 발행 가능 – **발행가능 금액 :**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금액 이내로 최소 10만원 이상 [상위기업으로부터 발행받은 매출채권금액]–[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] – **매출채권 만기일 :** 상위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을 발행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

※ **상위기업이란?**
매출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으로 1차 협력기업에게는 구매기업을 의미하며, 2, 3, 4차 협력기업에게는 각각의 상거래관계에 따른 상위 협력기업을 의미합니다.

매출채권 양도	▸ 대출을 받거나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협력기업은 상위 기업으로부터 발행받은 상생매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하는 매출채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, 은행은 협력기업에게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한 상위기업으로 매출채권양도 사실을 통지
대출금 상환 및 매출채권 결제	▸ 1, 2, 3, 4차 협력기업의 대출금은 구매기업이 1차 협력 기업에게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일괄 상환되며,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 만기이후에 실행한 2차, 3차, 4차 협력기업의 대출금은 해당 대출이 실행된 날의 익 영업일에 상환됨 ※ 2, 3, 4차협력기업의 대출금이 일괄 상환됨에 따라 발생되는 대출이자 환출분은 각각의 상위기업에게 지급됨 ▸ 1, 2, 3, 4차 협력기업이 상위기업으로부터 발행받은 상생매출채권은 각각의 상생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결제대금으로 결제됨
유의사항	▸ 구매기업이 1차 협력기업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 결제 후 1차 협력 기업이 하위 협력기업에 발행한 상생매출채권 해당금액은 가압류에 따른 미결제 방지 등 결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"대·중소기업 협력재단"명의 계좌에 예치 후 하위 협력기업의 추가 대출금 상환 및 상생매출채권 결제에 사용됩니다. ▸ 협력기업은 대출을 받거나 다른 협력기업에 상생매출채권을 발행 할 수 있는데, 이 경우 협력기업이 상위협력 기업으로부터 받은 상생매출채권 만기일에 은행으로부터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만기 도래한 상생매출채권금액에서 협력기업의 대출실행금액 및 하위 협력기업에게 발행한 상생매출채권금액이 차감된 금액입니다.

부대비용

협력기업 대출약정 시 인지세(고객부담50%)는 대출금액 4천만원 초과 시 금액구간별 차등부과

※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NH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※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 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※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 (1588-2100,1544-210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